

2021 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!

세법개정안



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

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

-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
- 일자리 회복 지원
- 내수 활성화·기업환경 개선



포용성 및 상생·공정 기반 강화

- 상생협력기반 강화
- 서민·취약계층 지원
- 과세형평 제고



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- 과세기반 정비
-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
- 조세제도 합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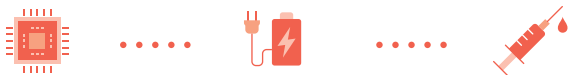


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

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01 국가전략기술(반도체·배터리·백신) 세제지원 강화

공제율	현행			개정			
	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	
R&D 비용(%)	일반	2	8	25	2	8	25
	신성장·원천기술	20~30		30~40	20~30		30~40
	국가전략기술	(신설)			30~40		40~50



공제율	현행				개정				
	당기분		증가분		당기분		증가분		
	대	중견	중소	증가분	대	중견	중소	증가분	
시설 투자(%)	일반	1	3	10	3	1	3	10	3
	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	3	3	5	12	3
	국가전략기술	(신설)			6	8	16	4	

02 지식재산(IP) 시장 수요·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

현행	개정	현행	개정
(신설)	· 중소·중견 취득 지식재산(IP)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	· 중소·중견 기술이전 소득 50% 세액감면, 일몰(~'21.12.31)	· 2년 연장(~'23.12.31)
		·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 25% 세액감면, 일몰(~'21.12.31)	· 중견기업까지 포함, 2년 연장(~'23.12.31)

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.

01 창업·벤처지원 강화

	현행	개정
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대상	연 수입금액 4,800만원 이하, 일몰(~'21.12.31)	연 수입금액 8,000만원 이하, 3년 연장(~'24.12.31)
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	벤처기업 임직원 대상, 일몰(~'21.12.31)	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, 3년 연장(~'24.12.31)

02 수도권 외 고용중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('21~'22년) 및 연장

	현행	개정
청년·장애인 등 1인당 공제금액 (수도권 외)	중소(3년간)	1,200만원 ▶ 1,300만원 + 100만원
	중견(3년간)	800만원 ▶ 900만원
	대기업(2년간)	400만원 ▶ 500만원
적용기한	일몰(~'21.12.31)	3년 연장(~'24.12.31)

03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(경력단절 인정기간: 퇴직 후 3년이상 → 2년이상)

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.

01 유턴기업 소득·법인세·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

	현행	개정
요건	해외사업장 양도·폐쇄·축소 후 1년 내 국내사업장 신·증설 완료	2년 내(+1년) 완료
적용기한	일몰(~'21.12.31)	3년 연장(~'24.12.31)

02 사업재편 과세이연(4년거처 3년 분할 익금산입)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

	현행	개정
특례 적용대상	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시	자산매각 후 투자 시에도 적용
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	3년	공동 사업재편 시 1년으로 축소

03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(한도 100만원) 적용기한 1년 연장(~'22.12.31)

포용성 및 상생·공정 기반 강화

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.

0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

	현 행	개 정
공제요건	① 어음결제금액 미증가 ② 현금성결제비율 미감소	① 어음결제비율 미증가 ② 삭제
공제율	· 15일 이내 지급: 0.2% · 16~60일 지급: 0.1%	· 15일 이내 지급: 0.5%(+0.3%p) · 16~30일 지급: 0.3%(+0.2%p) · 31~60일 지급: 0.15%(+0.05%p)
공제대상금액	상생결제금액	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 차감

0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

	현 행	개 정
지원대상	영업중인 소상공인, '20.1.31 이전 체결 임대차계약	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 '20.2.1~'21.6.30 신규체결 계약까지 확대
적용기한	일몰(~'21.12.31)	6개월 연장(~'22.6.30)

0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연장

	현 행	개 정
공제율	경영성과급 지급액 10%	▶ 경영성과급 지급액 15%(+5%p)
공제요건	영업이익 발생	▶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
적용기한	일몰(~'21.12.31)	▶ 3년 연장(~'24.12.31)

0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('21.1.1~'21.12.31 기부분)

	현 행	개 정
세액공제	기부금 × 15%(1천만원 초과분 30%)	기부금 × 20%(1천만원 초과분 35%)

서민·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.

01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개선

	현 행	개 정
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	단독 가구	2,000만원 → 2,200만원
	홀벌이 가구	3,000만원 → 3,200만원
	맞벌이 가구	3,600만원 → 3,800만원
근로·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	우편	본인 신청 시 전자송달

02 중소기업 '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

	현 행	개 정
허용기간	직전 1개 과세연도	직전 2개 연도('19, '20년)

03 재기 중소기업·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

	현 행	개 정
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·강제징수 유예대상	연매출액 10억원 미만, 일몰(~'21.12.31)	연매출액 15억원 미만(+5억원), 2년 연장(~'23.12.31)
재기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	'20.7.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	'21.7.25 기준(+1년)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

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0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/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
- 02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

	현 행	개 정
대상범위	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 매출액 70% 이상	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소득 매출액 50% 이상(△20%p)

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과세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.

0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

-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
- 거주자·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* 확대
* (현행) 해외부동산 취득·투자운용·처분 내역 → (개정) 해외부동산 보유내역까지 확대
-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

	현 행	개 정
세부담률 판정기준	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% 이하	국내 법인세 최고세율(25%)의 70% 이하로 상향
특정외국법인 범위	법인에 한해 적용	법인과세 '신탁'을 포함

02 가상자산 압류 매각을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

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.

0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

	현 행	개 정
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	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* 국제세목별·납부고지서별 관세(세관장 징수 내국세 포함)	150만원 미만(+50만원)
납부지연가산세율	일 0.025%	일 0.019~0.022%

0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

	현 행	개 정
매입세액공제 인정 계산서	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	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
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	확정신고기한까지	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

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.

0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

	현 행	개 정
배당소득 특례	비과세	비과세
	9% 분리과세	금융투자 소득 특례
	14% 분리과세	14% 분리과세
		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

02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(HS 2022, '22.1.1)에 따른 품목분류 등 관세율표 전면 개편